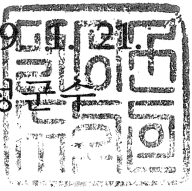


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166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11. 21
제 출 자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 건강 향상을 위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

2. 근거법령

- 지역보건법 제7조 제1항~제3항

3. 주요내용

- 계획기간
 -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: 2019년~2022년
 - 2019년 연차별 시행계획: 2019년
- 주요내용
 - 지역사회 현황분석
 -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
 -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 및 추진 과제
 -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관리 계획

4. 계획(안): 붙임과 같음

□ 지역보건법

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 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 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 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 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- 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시·군·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